□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실태조사보고서 요약

□ 용역개요

○ 사 업 명 : 미공군비행장 비행기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

○ 용역기간 : '99. 2. 7 ~ 2000. 1. 6 (11개월)

○ 용역업체 : (사)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

○ 용 역 비 : ₩28,710천원

□ 용역결과

▶ 측정지점 및 방법

○ 측정근거 : 소음.진동 공정시험방법

○ 측정방법 : 비행시간, 비행패턴(이륙,착륙,선회등), 기종, 운항횟수등 구분측정

○ 측정지점 : 비행장주변 13개소 (고정지점 4, 이동지점 9)

○ 측 정 월 : 5월, 6월, 8월, 11월

▶ 소음측정 및 분석결과

마을명 / 소음치	고정지점 (마을)			이동지점 (마을)								
	남수라	하 제	신하제	산 동	송 촌	장 원	신장원	외성산	구호촌	신오산촌	신난산	하 제
평균소음(dB)	104.8	87.2	77.4	91.2	87.7	81.3	82.4	76.3	77.1	83.4	88.5	89.3
WECPNL	94.7	91.4	82.2	81.3	77.7	69.8	72.7	65.3	65.7	76.1	81.6	82.2

※ WECPNL (Weighted Equivalent Continous Perceived Noise Level)

: 소음.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영향도(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단위)

○ 비행기가 활주로 북단으로 이륙하고 남단으로 착륙하기 때문에 남단보다는 북단지역이 소음피해 지역 넓음.

○ 선회에 의한 비행기 소음의 영향이 큼.

⇒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을 활주에서 바다방향으로 실시

▶ 역학조사 결과

○ 총 분석대상 —— 48명

- 인접지역 (하제, 신하제, 남수라) : 26명
- 주변지역 (구호촌,삼거리,신성산,외성산,원성산,내성산등) : 22명

○ 청력조사 결과

- 경미한 난청 : 23명 (47,9%)
  중등이상 난청 : 14명 (29.2%)
- 소음폭로와 청력손실에 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인접지역 거주자의 소음에 의한 청력장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○ 최종적인 결과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한 결론이 어려움

※ 연구의 한계

① 분석대상이 적어 전체 인구를 대표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움

② 분석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음.

③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대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노인성난청을 배제할 수 없다

▶ 현행법 적용여부

군산비행장은 현행법으로는 해결방안 없음.

○ 한미주둔군지위협정(SOFA)에 의해 미군당국은 환경(소음포함) 문제에 대한 면책권이 있음.

⇒ 동 협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결책이 없고 단지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과 미군측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

○ 또한 현행 항공법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음.

▶ 소음저감 대안

○ 미공군비행장 관리당국측에 비행기항로와 선회항로등을 변경토록 요구

○ 전투비행기 훈련시에는 가능한 서해안 쪽으로 비행기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

○ 야간의 비행기 운항과 비행기 테스트등을 금지토록 요구

○ 비행기소음에 대한 분담금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주체에 대한 소음분담금 부과 ⇒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
(항공법 제109조,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, 착륙료의 10/100~30/100)

□ 향후 소음피해 대처방안

1) 공항소재 및 공항주변지역 자치단체장등과 공동추진

○ 소음피해조사 실시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

○ 항공기 소음발생원 저감대책 강구

○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

2) 한·미 공군 당국등과 소음저감대책 협의 추진

○ 야간 비행기 테스트 금지등

※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

(사단법인 녹색연합배달환경연구소)